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3. 17 선고 2016가단10844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나1756(본소), 2017나1947(반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3. 17 선고 2016가단10844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 2017. 3.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의령군 C 대 7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토담조 스테이지붕 단층 무허가 창고1동 20㎡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60㎡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다. 2007. 11.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박광민

별지